

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16. 7. 14 선고 2016가합201 판결 [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가등기 등]

전 문

원고A

피고B

변론 종결무변론

판결 선고2016. 7. 14.

주 문

1.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대전지방법원 태안등기소 1998. 3. 25. 접수 제5129호로 마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 및 같은 등기소 1998. 5. 20. 접수 제8400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각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.
2.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.

N

청 구 취 지

주문과 같다.

이 유

1. 청구의 표시

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.

2. 무변론 판결 :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

재판장판사김기현

판사최미영

판사박민

별지